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	과 장 김준경 주무관 이병준	042-481-5258 042-481-5172
2021년 5월 26일(수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특허청, 우수한 국유특허의 창출 방안 논의

- 국유특허 관련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-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농촌진흥청,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국유특허*를 창출하는 20개 기관과 27일 ‘국유특허 정책협의회’를 개최한다.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유특허 관련기관들의 기관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.

* 국유특허란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이며, 특허청에서 관리함

□ 국유특허는 2021년 5월 현재 약 8,500여건으로, 농업·수산업 분야에서 의약·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, 국가의 적극적인 R&D 투자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*이다.

* 국유특허 등록건수 : 5,651건('16) → 8,213건('20) → 8,500건('21.5)

□ 국유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발명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바,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. 특허청은 그동안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*, 전용실시계약 체결조건 명확화**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.

* 매출발생에 따른 사후납부 → 선금금(최소실시료) 납부, 분할 납부 추가

**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→ 사업화에 장기간·고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

□ 또한,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 그동안 국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*이 함께 발명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발명만을 승계하였으나, 비공무원의 발명도 동등하게 승계·보상하게 된다. 이에 따라 비공무원의 발명 의욕이 향상되고 우수한 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일정기간 연구과제별로 국가나 지자체에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 연구원, 석사연구원 등

②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발명을 모두 승계하고 있었는데, 앞으로는 우수한 발명을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발명에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.

③ 이외에 국유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갱신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하여, 사업화에 고비용 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주저했던 경우에도 국유 특허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특허청과 각 기관은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면서,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의 마련 방안과 함께 민간에서 국유특허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이번 정책협의회로 우수한 국유 특허가 늘어나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.”라며, “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활용과 이병준 주무관(☎ 042-481-51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 목적

- 국가공무원이* 직무상 개발한 발명(직무발명)을 장려하고, 국유화된 직무발명(국유특허권)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,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

*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여 관리·처분

□ 사업 내용

- (보상금 지급)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승계하여 국유특허권으로 전환하고, 이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*

*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내지 제19조

- (등록보상금) 국가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특허 50만원, 실용신안 30만원, 디자인 20만원을 발명자에게 지급

- (처분보상금)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, 처분수입금에 따라 발명자 및 관련 기관에 보상*

* ① (발명자 보상) 처분수입금의 50%, ② (발명기관 포상) 처분수입금(1천만원~1억원 초과)에 따라 포상금 지급(1백만원~1천만원), ③ (수탁기관 포상) 수탁기관에서 처분한 수입금의 17.5%

- (사업화 촉진)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권을 민간에 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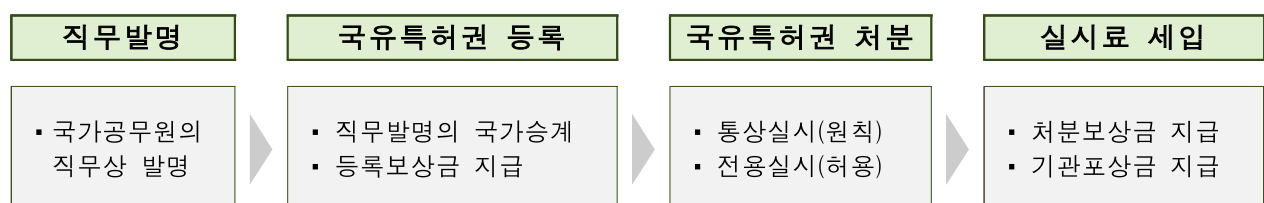
- (업무위탁) 전문 기술거래기관*에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탁하여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

* 농업기술실용화재단(농업·축산), 한국임업진흥원(산림), 한국발명진흥회(기타)

- (홍보강화)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(IP-Market)을 통해 기술 분야별 우수 국유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* 민간에 대한 권리이전 촉진

* 국유특허권 유망기술 소개서 및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)을 활용한 국유특허권 평가등급 결과 등재·배포(반기 1회)

□ 사업 추진 절차



- 직무발명 보상의 적용 대상을 비공무원으로 확대
 -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비공무원*으로 확대하여 연구자간 차별을 해소
 - * 일정기간 연구과제별로 국가나 지자체에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연구원, 석사연구원 등(연구중심 기관의 경우, 전체의 약 20~50% 차지)
- 발명기관이 직무발명을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
 - 지금까지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모든 직무발명을 승계·출원하고 있어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옴
 - 발명기관에 승계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여, 우수발명에 대한 관리 역량 집중 및 행정비용(출원비용, 대리인비용) 절감을 유도
-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의 갱신을 2회 이상 허용
 - 기술의 특성상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*되는 경우, 현재와 같이 계약이 1회만 갱신가능하다면 개발비용 회수가 어려운 상황
 - * 의약분야의 경우 사업화까지 15년 이상, 개발비용 약 750억원 소요 (출처 : Bain drug economics model 2003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(동등생물의약품기준))
 - 이에 현재 다른 법령*에서 규정한 갱신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활성화 유도
 - *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10 제1항 및 제2항
- 개정된 발명진흥법 시행 : '21.10.21.